

제18장

경쟁

제18.1조

목적

양 당사국의 무역 관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을 고려하며,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의 금지, 경쟁 정책의 이행 그리고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,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인정한다.

제18.2조

경쟁법과 경쟁당국

1.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한다.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2.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.
3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에 대한 모든 제외 또는 면제가 투명하고 공공정책이나 공익에 근거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.
4. 각 당사국은 경쟁법과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에 의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.

제18.3조

이행

양 당사국 경쟁당국의 집행 정책은 아래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명성, 적시성,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.

1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 결정이 서면으로 제공되며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모든 관련 사실 조사 결과와 법적 근거를 기술하도록 보장한다.
2. 각 당사국은 경쟁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적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 각 당사국은 각국의 경쟁법, 규정, 지침 또는 절차상 조사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, 자국의 경쟁당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보장한다.
3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국적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집행한다.
4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하여 인 또는 실체에 제재 또는 시정조치가 부과되기 전에, 그러한 인 또는 실체에 자국의 경쟁법 또는 규정이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서면 이유와 진술 및 증거 제출의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한다.
5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시정조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 또는 실체가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 그러한 제재 또는 시정조치의 독립적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제18.4조

협력

1. 양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 이에 따라, 양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통보, 협의, 정보교환 및 조정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, 각국의 경쟁법 및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협력한다.

통보

2.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에 관련된 집행 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, 그러한 집행 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영어로 통보한다.

3. 양 당사국의 법에 반하지 않고 진행 중인 다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, 통보는 집행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.

협의

4.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,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.

5.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.

정보교환 및 비밀유지

6.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, 다른 쪽 당사국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각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 다만, 이는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각 당사국의 비밀유지 규칙과 기준에 합치해야 한다.

7. 각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, 정보를 제공한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.

제18.5조

공기업과 지정독점

1. 양 당사국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이 그들 각각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. 다만, 이 규정의 적용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에 부여된 특정 공공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.
2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 또는 지정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
제18.6조

분쟁해결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.

제18.7조

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반경쟁적 관행이란 다음을 말한다.

가. 경쟁의 방해, 제한 또는 왜곡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 간 합의 및 기업 단체의 결정

나.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, 또는

다. 특히 지배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의 합병 또는 그 밖의 구조적 결합

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나. 이스라엘의 경우, 이스라엘 독점금지청 또는 그 승계기관. 그리고

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그리고

나. 이스라엘의 경우, 「제한적 거래 관행법」(5748-1988)